허가번호 제 안성150호	□ 중 간 차 분 업 □ 최 종 차 분 업 □ 종 합 차 분 업 □ 方 간 재 활 용 업 □ 조 합 재 활 용 업 □ 조 합 재 활 용 업			
상 호(명칭)	(주)그린플러스 사업자등록번호 125-81-84443			
성 명(대표자)	김우순			
주 소(사무실)	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개정산업단지로 85 전화번호 671-8383			
전 문 처 리 분 야	종합재활용업			
영업대상폐기물	폐합성수지류(155톤) 폐섬유류(6톤) 폐타이어(1톤) 폐합성고무류(6톤)			
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소재지	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개정산업단지로 85 전화번호 6718383			
시설·장비	파쇄·분쇄 시설(530HP,일가동시간:8) 파쇄·분쇄 시설(500HP,일가동시간:8) 파쇄·분쇄 시설(500HP,일가동시간:8) 파쇄·분쇄 시설(475HP,일가동시간:8) 집게차(2013-37,91로7293) 암롤트럭(2013-43,83저5114) 집게차(2014-46,87 루3968) 암롤트럭(2016-32,80머9167) 암롤트럭(2017-08,81우7387)			
기술능력	수질환경기사 - 1			
허용보관량	3000t(톤)(25m * 24m * 5m 17일분)			
허가조건				
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중 중간처분업				

< 변 경 사 항 >

연 월 일	내 용	확 인
2013-05-03	○업종변경: 중간처리업(재활용전문) → 폐기물종합재활용업	양용모
2013-10-04	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(SRF :고형연료 비성형제품 제조), FLUFF제조	한재남
2013-10-18	사용개시 수리	한재남
2013-11-29	○ 대표자 변경 및 차량1대 증차 - 최진호 → 김인섭 - 83저5114차량 증차	한재남
2013-12-23	○ 처리업 변경신고 - 운반차량 감차(91가9839)	한재남
2014-03-27	○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-처리능력 변경 : 105톤/일 → 168톤/일	한재남
2014-11-18	- 수집운반차량 1대증차(87루3968)	최동규
2015-03-18	- 분쇄시설 500마력 1기증설	최동규
2016-08-18	○ 수집운반차량 1대 증차 - 1대 증차(80머9167)	조지현
2016-10-06	- 파쇄시설(446HP) 1대 증설	조지현

< 변 경 사 항 >

연 월 일	내 용	확 인
2016-11-30	○대표자 변경 - 변경전 : 김인섭 - 변경후 : 김우순	조지현
2017-03-15	○재활용시설 변경 - 기존 : 파쇄시설 446HP 1대 - 변경 : 파쇄시설 475HP 1대	조지현
2017-03-23	○사용개시신고 - 분쇄시설 500HP 1대 - 파쇄시설 475HP 1대	조지현
2017-03-30	○ 수집운반차량 변경 - 1대 증차(81우7387)	조지현

< 행정처분사항 >

일련 번호	연 월 일	위 반 내 용	연 월 일	처 분 내 용

고형연료제품 허가조건

- 1. 고형연료제품을 공급하기 이전에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한
- 국 환경공단으로부터 고형연료제품 품질·등급 인증을 받아야 함. 2. 고형연료제품 제조자는 분기별 1회 이상 자신이 제조한 고형연료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, 그
- 결과를 인증기관에 제출할 것. 다만, 최초 인증을 받은 해당연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고형연료제품을 공급하기 이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5조의3제3 항 및 같은 법 시 규칙 제20조의6[별표8] 제1호 마목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공급(공급 변경)계획서를 공급하려는 시설의 소 관할 시군 및 인증기관(한국환경공단)에 제출 하여야함. 재지
- 지 전을 지는 및 단증기단(단속단증증단기에 제를 이어하다.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6 [별표8](고형연료제의 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)에 따른 준수사항도 지켜야함.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·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근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라.
- 다
- 6. 허용보관량 및 보관기일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음. 7. 허용처리능력 등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.